

「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. 11. 26(화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3. 12. 4(수)

다. 상정일자 : 2013. 12. 4(수) 제198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)

가. 제안이유

- 평창군에서 설치 운영중인 장례식장 사용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,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50%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진부장례식장 주소를 오대천로 1958-21로 변경 (안 제2조제2호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사용료 면제 (안 제9조제3항)
-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는 사용료 50% 감면 (안 제9조제4항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홍금숙)

- 본 조례안은 진부장례식장의 도로명 주소를 주민들이 인식하기

쉬운 곳으로 변경하고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, 행려자 등에 대한
사용료 100% 면제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용료
50%면제를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
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《생 략》

5. 토론요지

《없 음》

6. 심사결과

《원안의결》

7. 소수의견 요지

《없 음》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건의사항 : 없 음
- 기타 특별한 사항 : 없 음

【붙임】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

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운영을 위하여”를 “운영에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1970-11”을 “1958-21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단서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
2. 행려자
3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50%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2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

제11조 중 “조례로”를 “조례에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